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 개정으로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6월 14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지하자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당사자는 손해를 치유하고 손해배상을 아울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지하자원법은 201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러시아 전략적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인수 시 신고 30일 내에 심사 마치기로

2012년 5월 25일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러시아 전략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5% 이상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정부민간파트너십에 관한 연방법률안 예고

예산사용의 효율성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러시아정부는 '정부민간파트너십에 관한 법률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외국인투자자 포함)과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합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완성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러시아내 각종 민자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상사소송법 약식재판 대상 확대

2012년 6월 25일 러시아상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재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법인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0 루블(약 7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300,000 루블(약 10,59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약식재판의 대상을 6가지로 확대 및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의 상당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모스크바주 일부 도시 모스크바시로 편입

2012년 7월 1일부로 모스크바시의 공식면적이 현재보다 2.4배 확대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스크바인구도 약 25만 명이 증가되어 117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모스크바시를 중심으로 서부, 남서부, 남부지역이 편입지역인데 이전 모스크바주에 소속되어 있던 21개 행정단위가 모스크바시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